

『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지향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계속 증가하고 잔혹해져가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‘스토킹’, ‘스토킹행위자’, ‘피해자’ 등 스토킹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. 스토킹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 스토킹 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,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,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